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허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97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5.

발 의 자 : 허영 · 김태선 · 박상혁
홍기원 · 김병주 · 한민수
김영진 · 서삼석 · 장철민
박용갑 · 부승찬 · 위성곤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하지만, 유치원이나 학교 등 교육 기관에서도 여전히 적지 않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음.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아동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음.

아동관련 기관의 장은 기관에 취업(예정)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(예정)중인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여 취업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.

하지만,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취업자 등이 학교에 배치·과전되고 나서야 학교에서 범죄 전력이 확인 가능함. 이 경우 학교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기간 동안 아동이 아동학대 범죄에 노출될 우려

가 있고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뒤늦게 확인하여 재모집 절차를 진행할 경우 그 기간동안 인력공백도 발생할 가능성이 큼.

이에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범죄 노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(안 제29조의3).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3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제4항 및 제5항”을 “제4항부터 제6항까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7항) 중 “제6항”을 “제7항”으로 한다.

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 기관의 취업자 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전력을 확인할 수 있다. 이 경우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.

1. 제1항제8호의 유치원
2. 제1항제18호의 학교 및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의3(아동관련기관의 취업 제한 등) ① ~ ⑤ (생 략)	제29조의3(아동관련기관의 취업 제한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 음)
<u><신 설></u>	<u>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 기관의 취업자 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전력을 확인할 수 있다. 이 경우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관 련 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 로 본다.</u>
	<u>1. 제1항제8호의 유치원</u>
	<u>2. 제1항제18호의 학교 및 학습 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 시하는 기관</u>
<u>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아 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 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</u>	<u>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u>
<u>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</u>	<u>⑧ -----제7항----- -----</u>

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·범위	-----
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	-----
로 정한다.	-----.